

## 【 AXA국내여행보험(단체용Ⅱ) 사업방법서 별지 】

### 1. 보험의 종류

특종 - 상해/여행/국내여행보험

### 2. 보험종목의 명칭

AXA국내여행보험(단체용Ⅱ)

### 3. 보험의 목적

- (1)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 (2) 법률상의 배상책임
- (3) 동산 또는 부동산

###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2)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 (3) 가입연령  
1세 ~ 100세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5. 의무부가특약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 8.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 특별약관 계약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공시이율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

(1) 판매채널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제외)

(2)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3)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은 별도의 정한 바에 따름

(4)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 운용에 관한 사항

①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②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이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함

(5) 회사는 보험상품의 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를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음

(6)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별약관

① 적용근거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② 적용범위 :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 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환 가능